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성실납세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지방세 과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목폐지에 따른 성실납부자 기준 조항 개정(안 제4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세목명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를 “자동차세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 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 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 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u>자동차세</u> 및 <u>주민세</u> <u>재산분에</u> 한정한다)를 계속 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p>	<p>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 ----- <u>자동차세로</u> ----- ----- ----- ----- -----.</p>